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고양산업진흥원 2022년 제1차 기간제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고양산업진흥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분야	모집 부문	합격자	휴대전화 (뒷번호 네자리)
1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사업운영	장 ○ 화	0989
2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지원	이 ○ 희	9000
		유 ○ 균	3494

2. 임용후보자 등록 및 서류 제출

○ 등록기한 : 2022. 2. 22.(화) 14:00까지

※ 임용예정일 2022. 2. 24.(목)

○ 장 소 : 고양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빛마루 14층

○ 등록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1)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붙임 서식1) 1부.
- 2) 경력증명서(응시원서 작성 사항 전체) 1부.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 직장가입자) 1부.
- 4) 학력증명서(대학교(또는 고등학교) 이상 전체) 각 1부.
- 5)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작성 사항 전체)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 7)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9)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2) 1부.
-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3, 서식 4) 1부.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합격자 본인 및 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함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사람
 3. 「고양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진흥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별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임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문의 : 경영지원팀(031-960-7816) 끝.

[서식 1]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성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고양산업진흥원 2022년 제1차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합니다.

※ 구비서류

- | | |
|----------------------|-------------------------------|
| ① 경력증명서 각 1부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③ 학력증명서 각 1부 | ④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정함) |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⑧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 ⑨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일본어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고양산업진흥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성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고양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회 · 열람 결과 결격사유 해당 전력이 없습니다.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연번	결격사유	조회방법	조회결과	
			해당없음	해당
1.	미성년자	신분증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 4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법원 나의 사건검색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 <서식2> 작성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4.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남성의 경우 민원24 병적증명서 발급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 <서식2> 작성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결격사유 조회방법 안내

조회 방법	확인방법	확인내용
○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인터넷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설정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사유 : 기타- 신청내용 : 일부사항증명-성년후견증명서 상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부존재함” 확인시 해당 없음
○ 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인터넷 조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나의사건검색 - 인증서로 검색공인인증서 로그인설정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명 : 전체(최하단)- 사건종류 : 회생파산조회결과 없는 경우 해당없음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인터넷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발급/열람 - 수사자료표공인인증서 로그인설정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보서유형 : 개인범죄수사경력(통합)- 조회목적 : 실효된 형 등 포함- 회보방법 : 열람회보서 열람 - 조회결과 “해당자료없음”의 경우 해당 없음
○ 민원24 병적증명서 발급 ※ 남성에 한함	인터넷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24 - 병적증명설정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대체)복무 구분 : 군필자는 복무를 마친 사람, 미필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설정항목 전체 “기재”로 설정군필자는 “해당 없음”, 미필자는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불가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에 한함	[서식2]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사전확인사항 확인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 상기 결격사유 확인서류는 임용후보자 본인확인용으로 진흥원으로 제출 불요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고용 시 사전 확인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 없으면 추가 확인 불필요

※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비위면직자등(‘공직자로서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과면·해임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해당 여부 및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을 경우

아래 체크리스트(확인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부패방지권의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의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의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의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의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